

대구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가합2035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윤

변론 종결 2021. 4. 22.

판결 선고 2021. 7. 1.

주 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C에게 별지 2 기재 제1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가.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C에게 별지 2 기재 제2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6. 3. 2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237,150,000원, 보증채무최고액 308,295,000원, 보증기한 2016. 3. 25.부터 2017. 3.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 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8.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인 경우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2) 같은 날 D의 대표이사인 C은 D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 308,295,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들은 ① 2017. 3. 17. 보증기한을 2018. 3. 23.로 변경하였고, ②

2018. 3. 21. 원화보증금액을 225,250,000원으로, 보증채무최고액을 292,825,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9. 3. 22.으로 각 변경하였으며, ③ 2019. 3. 20. 보증금액을 212,000,000원으로,

보증채무최고액을 275,6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20. 3. 20.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약정과 위 변경약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C은 2018. 12. 17. 처남이던 피고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인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9. 1. 2. 자신의 보험설계사였던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에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인 제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E은 2020. 3. 4. D의 당좌부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발생일자 2020. 3. 4., 부실사유 신용보증사고, 부실원인 신용정보관리(거래정지처분)'의 신용보증부실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4.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D을 대위하여 E에 205,665,050원(= 대출원금 204,637,080원 + 이자 1,027,970원)을 변제하였다.

3) 한편 위 2)항 기재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D의 미수위약금 408,89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D과 C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 등 권리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766,15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0. 대구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21. 6. 28.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에게 2억 원,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2020카단32339호로 피고 A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카단32340호로 피고 B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자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이 2016. 3. 25.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C이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채권 성립의 기초),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 E의 채권최고액 합계 4억 8,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7. 7. 3. G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위 가등기에 대하여 2017. 9. 26. 채권자 H이

사해행위라며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9. 4. 4.과 약 5개월 후인 2019. 6. 12. 각 대한민국(남대구세무서장)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전후로 C의 재정상태가 이미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③ 이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D에 대하여 2020. 3. 4.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4. 21. D의 E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한 점(채권의 실제 발생)이 인정되므로, 비록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상태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물적 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84055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한편,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또한 연대보증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나) 2018. 12. 17. 당시 C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① 적극재산

앞서 본 증거에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2. 17.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	300,000,000원 ¹⁾ 3억 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7억 8,0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 4억 8,000만 원(= 1순위 E 3억 원 + 2순위 E 1억 8,000만 원)
2	I콘도미니엄 제3층 J호의 / 00 지분	390, 56원
3	'K' 상가분양권(2층 L호)	47,034,440원
4	'K' 상가분양권(2층 M호)	346,006,080원
5	은행예금	33,557원
합계	793,762,233원	

한편, 피고들은 K 상가분양권의 가액산정과 관련하여, D이 주식회사 N로부터 K에 관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위 상가분양권을 받은 것이므로 각 분양대금 전액을 그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위 상가분양권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40%는 준공 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K가 준공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가치는 위 각 상가분양대금에서 잔금 40%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소극재산

앞서 본 증거에 E과 O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2. 17.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P은행 대출채무	50,000,000원	80,000,000원	0원
2	E 대출채무	220,000,000원	300,000,000원	0원
3	Q조합 대출채무	22,528,000원		22,528,000원
4	Q조합 대출채무	288,338,000원		288,338,000원
5	E 보증채무	1,039,750,000원	80,000,000원	859,750,000원
6	R캐피탈 보증채무	76,946,000원		76,946,000원
7	원고 보증채무	225,250,000원		225,250,000원
8	피고 A 대출채무	80,000,000원	200,000,000원	0원
합계	2,302,822,000원	860,000,000원	1,553,227,000원	

③ 소결

위와 같이 2018. 12. 17.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의 당시 자력을 고려하였을 때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상 주채무자인 D의 일반적인 자력 여부는 이 사건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달리 D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D과 C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9. 1. 2. 당시 C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① 적극재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1. 2.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	100,000,000원2) 1억 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7억 8,0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 6억 8,000만 원(= 1순위 E 3억 원 + 2순위 E 1억 8,000만 원 + 3순위 피고 A 2억 원)
2	I콘도미니엄 제3층 J호의 / 00 지분	390, 56원
3	'K' 상가분양권(2층 L호)	47,034,440원
4	'K' 상가분양권(2층 M호)	346,006,080원
5	은행예금	6,088,50 원
합계	654,519,776원	

② 소극재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1. 2.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P은행 대출채무	50,000,000원	80,000,000원	0원
2	E 대출채무	220,000,000원	300,000,000원	0원
3	Q조합 대출채무	22,528,000원		22,528,000원
4	Q조합 대출채무	288,338,000원		288,338,000원
5	E 보증채무	1,039,750,000원	80,000,000원	859,750,000원
6	R캐피탈 보증채무	76,946,000원		76,946,000원
7	원고 보증채무	225,250,000원		225,250,000원
8	S보험 보증채무	1,602,000,000원		1,602,000,000원
9	피고 A 대출채무	80,000,000원	200,000,000원	0원
10	피고 B 대출채무	60,000,000원	20,000,000원	0원
합계	4,004,812,000원	980,000,000원	3,55,227,000원	

③ 소결

위와 같이 2019. 1. 2.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8. 12. 17. 당시 3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7억 8,0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 4억 8,000만 원(=1순위 E 3억 원 + 2순위 E 1억 8,000만 원)], 2019. 1. 2. 기준 1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7억 8,0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 6억 8,000만 원(=1순위 E 3억 원 + 2순위 E 1억 8,000만 원 + 3순위 피고 A 2억 원)]의 책임재산이 각 존재하는 상황에서 C이 수인의 채권자 중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C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 A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C에게 2015. 8. 31.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대여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가 다소 이례적이고(이에 관하여 위 피고는 '대여 당시 매형이었던 C이 2018. 10.경 재혼함에 따라 다소 서먹한 관계가 되어 당시까지 미루어뒀던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나, 이런 설명으로도 위 이례성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더욱이 D의 직원으로 2020년경까지 약 27년간 근무하여 D와 C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 B은 오랜 기간 C의 보험설계사로 관계를 맺던 와중에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우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C의 통장에 1억 원을 입금한 2018. 12. 31.의 2일 전에 C이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대여 외에도 서로 간에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 한편 그 명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구상채무자인 C에게 별지 2기재 제1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구상채무자인 C에게 별지 2기재 제2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자신에게 바로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따라 위 주장 중 양도의 상대방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욱도

판사박지원

판사김아영

별지

1) 3억 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7억 8,0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 4억 8,000만 원(= 1순위 E 3억 원 + 2순위 E 1억 8,000만 원)

2) 1억 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7억 8,0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 6억 8,000만 원(= 1순위 E 3억 원 + 2순위 E 1억 8,000만 원 + 3순위 피고 A 2억 원)